

[별표 4]

물적설비 요건(영 제20조의2제3항 관련)

1.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

- 가. 주전산기, 데이터베이스 서버, 저장장치, 단말기,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, 향후 영업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
- 나. 침입탐지, 침입방지시스템,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
- 다.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
- 라.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,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·관리되고 있을 것

2. 업무공간과 사무장비

- 가.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(Chinese Wall)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
- 나.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는 것
- 다.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·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

3. 보안설비

- 가. 전산설비, 통신수단,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는 것
- 나.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이 마련되어 있을 것

4.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

- 가. 정전·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
- 나.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이 마련되어 있을 것

5. 그 밖에 인가(등록)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

